##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광진구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여 입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서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장(제2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22조(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 「지방자 치법」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서울특별시광진구자치법규입법및운 영에관한조례	[제명] <u>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u> <u>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의 입 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 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 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 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 자치 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 자치법」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 여 위임 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 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여 입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 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서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장 보칙	<u>제6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u> <u>청구</u>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 「지방자치 법」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 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 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